KOSHA GUIDE C - 98 - 2014

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

2014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안전학회 최명기
- 제정 경과
- 2014년 8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(765kV울진-신태백 가공송전선로 ○○건설현장등)
- 345kV 이하 가공 송전선로공사 표준 시공요령(한국전기공사협회)
- 송전분야 시공기준(한국전력공사)
- 765kV 송전선로 일반 시방서(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 건설처)
- KEC 154kV 송전선공사(공사시방서, 특기시방서)
- 송변전분야 위험성 Check List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(안전조치) ~ 제27조(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)
- 가공송전선로 철탑 심형기초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(KOSHA GUIDE C-54-2012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4년 11월 24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C - 98 - 2014

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가공 송전선로를 위한 철탑공사의 자재운반, 철탑 기초공사, 철탑 조립공사, 가선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기타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등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154kV 이상 초고압 가공 송전선로를 위한 철탑공사의 철탑 기초, 철탑 조립, 가선 및 이에 수반되는 기타공사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.





<그림 1> 철탑조립작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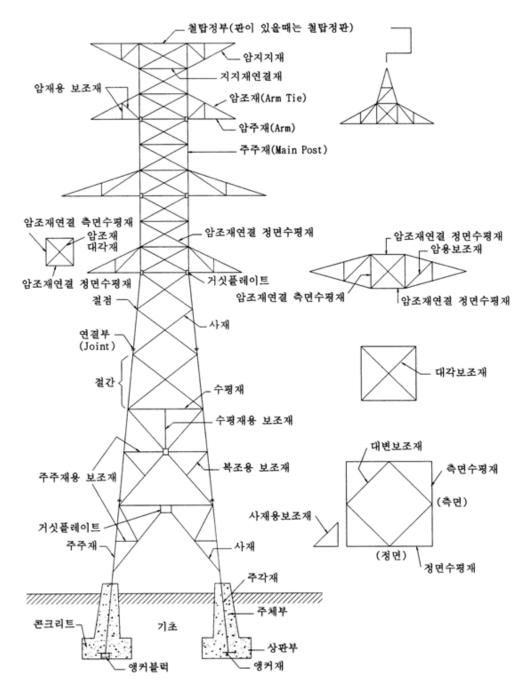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"가공 송전선로"라 함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 하는 선로로서 공중에 설치된 송전선로를 말한다.
- (나) "철탑"이라 함은 각철(Angle)이나 철주(지지가 1개인 강관주 포함)를 소

KOSHA GUIDE C - 98 - 2014

재로 하여 높이 세운 구조물을 말한다. 주로 송전선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데, 그 형태는 선로의 송전전력·전압·지형 등에 따라 다르다.

(다) "철탑 부재명칭"은 다음 <그림 2>와 같다.



<그림 2> 철탑 부재명칭

C - 98 - 2014

- (라) "헬기장(Heliport)"이라 함은 회전익항공기(헬기)의 도착, 출발 또는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 또는 구조물 위에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- (마) "하강장"이라 함은 회전익항공기가 지면 또는 구조물의 표면에 접지 또는 부양할 수 있는 구역인 헬기 전용 이·착륙장을 말한다.
- (바) "키락(Key Lock)방식 안전로프"라 함은 안전대에 부착한 Key-Lock본체에 미리 철탑위에 설치한 안전로프를 차례로 연결하여 이동 및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, 이동 작업 간에 심리적인 실수에 의해 오 조작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1개 이상의 안전로프로 근로자를 보호·지지 할 수 있는 떨어짐 재해방지용구를 말한다.



<그림 3> 안전대에 장착한 키락 본체

- (사) "각입"이라 함은 철탑의 기초작업에서 굴착 다음공정으로 네 곳의 기초 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탑의 앵커재 및 주각재 또는 주주재를 설치하는 공정을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 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철탑 조립공법의 종류

(1)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철탑 조립 작업 공법은 조립봉 공법, 이동식 크레인 공법, 철탑 크레인 공법, 헬기공법 등 4가지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.

C - 98 - 2014

(가) 조립봉 공법

- 철탑의 주주 1각(Single Pier)에 목재 혹은 강재 조립봉을 부착하고 부재를 들어 올려 조립하는 공법으로서 비교적 소형 철탑에 적합

(나) 이동식 크레인 공법

- 이동 가능한 트럭 크레인, 크롤러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탑을 조립하는 공법

(다) 철탑 크레인 공법

- 철탑 중심부에 철주를 구축하고 그 꼭대기에 360° 선회가 가능한 철탑크 레인을 장착하여 철탑을 조립하는 공법

(라) 헬기 조립 공법

- 지상 조립한 부재를 헬기를 이용해서 조립하는 공법



<그림 4> 조립봉 공법



<그림 5> 이동식 크레인 공법



<그림 6> 철탑 크레인 공법



<그림 7> 헬기 조립 공법

- (2) 가공 송전선로공사의 종류와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.
- (가) 철탑 기초 공사
 - ① 역T형 기초
 - ② 심형 기초
 - ③ 파일 기초
 - ④ 우물통 기초
 - ⑤ Rock anchor기초
- (나) 철탑조립 공사
 - ① 조립 공통공사
 - · 조립 준비 작업, 볼트채움 및 조임작업, 철탑 도장 작업, 항공 장애등 작업, 마무리 작업
 - ② 조립봉 공법
 - ·시공계획 작성, 조립봉 설치작업, 철탑 조립작업, 암 조립작업, 안전장치 작업, 조립봉 철거작업, 대변재, 대각재 부착작업, 부속설비 작업
 - ③ 이동식 크레인 공법
 - ·시공계획 작성, 이동식크레인 설치작업, 철탑 조립작업, 암 조립작업, 안 전장치 작업
 - ④ 철탑 크레인 공법
 - ·시공계획 작성, 철탑 크레인 설치작업, 철탑 조립작업, 암 조립작업, 철탑 크레인 해체작업, 대각재 부착작업, 부속설비 작업
 - ⑤ 헬기 공법
 - ·시공계획 작성, 헬기의 철탑 조립작업
- (다) 전선설치공사(가선공사)
 - ① 전선설치 공통공사
 - ·드럼장 및 엔진장 설치작업, 방호 발받침 작업, 철탑 보강작업, 활차의 설치작업, 통신설비의 설치작업, 감시·유도방지대책 작업
 - ② 전선 펴기작업(연선작업)
 - · 와이어 펴기 작업, 전력선 펴기 작업, 조금차 공법, 가공지선 · 전력선의 가접속 작업, 가공지선 · 전력선의 본접속 작업, 조인트 프로텍터의 부착 작업
 - ③ 전선 당기기작업(긴선작업)
 - · 애자장치 설치 작업, 이도자 부착 및 전선처짐 측정작업, 가공지선의 당기기 작업, 전력선의 당기기 작업, 스페이서 및 스페이서댐퍼 설치작업,

C - 98 - 2014

점퍼(Jumper)장치 부착작업, 부속품 부착작업

- ④ 프리패브(Prefab) 가선공법
 - 전선설치 준비작업, 전선 펴기 작업, 전선 당기기 작업

5. 철탑 시공순서



<그림 8> 철탑공사 시공순서도

- (1) 철탑기초공사
- (가) 기초공사를 위한 진입로 공사
- (나) 철탑 부지조성공사
- (다) 철탑 기초 굴착공사(각입작업 포함)
- (라) 철탑 기초 콘크리트 타설



<그림 9> 철탑 진입로 공사



<그림 10> 기초 콘크리트 타설

- (2) 철탑 조립 공사
- (가) 바디(Body) 및 커먼(Common) 조립
- (나) 휴게소, 사다리통로, 통로 조립
- (다) 암 조립
- (라) 내부 보조재 부착





<그림 11> 주주재와 사재 지상조립 및 암 지상조립





<그림 12> 전력선암 조립 및 지선암 조립







<그림 14> 중간암조립

C - 98 - 2014

- (3) 전선설치공사(가선공사)
- (4) 전선긴선공사(전선 당기기공사)

6. 철탑 기초공사 작업안전

- (1) 철탑 기초공사를 위한 산악지형의 진입로 공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 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해당 기계의 넘어짐, 지반 무너짐 등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보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나) 가설도로는 배수를 양호하게 하여 노면의 유실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(다) 성토면은 충분한 다짐을 통해 비탈면 무너짐 요인을 제거하고, 절토면은 고르기를 하여 낙석 및 우수로 인한 법면유실 방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(라)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는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위험에 대비하여 도로 폭을 넓게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마) 자재의 임시 적치 시 또는 공사차량 주차 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바) 굴곡이 심하고 차량출입이 빈번한 장소에는 반사경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사) 공사 중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표지를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5> 철탑 기초공사 전경

(2) 철탑 부지조성 공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(가) 나무를 넘어뜨릴 때에는 안전을 확보하고 충분히 안정된 자세로 작업하며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.
- (나) 경사면은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사면붕괴와 법면유실을 예방하고 성토면 은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.
- (다) 작업구획 표시물은 운전원의 착각으로 인한 차량 전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탑부지 경사면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.





<그림 16> 철탑 부지 전경

- (3) 철탑 기초 굴착공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굴착면 형성 시 안정된 경사면을 유지하도록 굴착하고, 강우에 의해 경사 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나) 굴착 내부로 출입 시에는 안전계단식 사다리를 굴착 저면까지 설치토록 하여야 하고, 출입하는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다) 임시로 쌓아둔 굴착토에 시트(천막 등) 등을 덮어 빗물에 의한 토사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(라) 굴착면 상부에는 적절한 유실방지용 흙 마대를 쌓아 굴착공 안으로 토사 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.
- (마) 용수가 여러 장소에서 나오거나, 용수량이 많은 경우 감리 등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아 필요한 경우 굴착공법을 변경하는 등 안전한 공 법으로 굴착하여야 한다.
- (바) 철근을 높게 설치할 경우 무게의 중심이 높아지므로 약간의 편하중에 의해서도 쉽게 넘어지므로 수직철근은 가능한 짧게 조립하여야 한다. 이때 결속은 매 이음 개소마다 철저히 하고, 조립되는 철근은 장척이므로 강관파이프 등의 버팀대나 와이어로프 등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을 실시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7> 철근조립 및 각입 전경

- (사) 각입 작업 전 설계도서의 내용을 점검하고, 다음 순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다.
 - ① 기초 중심점 확인
 - ② 중심점을 기준하여 각입재의 기초판(Setting plate) 설치
 - ③ 각입재의 기초판 상부에 주각재의 위치 표시
 - ④ 각입재 설치
 - ⑤ 고정용 지지대 설치
- (아) 각입 작업 시에는 굴착공 내로 출입을 금지토록 하여야 하고, 중장비 운 전 중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.
- (자) 각입 검측 시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, 안전로프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떨어짐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(차) 경사면에 철탑이 설치되어 기초콘크리트의 묻힘깊이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한다.
- (카) 굴착 공사 시 암반이 노출되더라도 기초 콘크리트의 저면 지반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- (4) 철탑 기초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레미콘으로 철탑 기초를 타설할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나) 타설시 근로자가 철근사이로 실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.

C - 98 - 2014

(다) 기타 철탑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에 대한 내용은 콘크리트공사의 안전보 건작업 지침(KOSHA GUIDE C-43-2012)에 따른다.



<그림 18> 철탑 기초콘크리트 타설 전경

- (5) 철탑기초 설치장소의 지반상태 확인하고 지내력을 검토하며, 지내력 미달 시에는 감리 등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아 필요한 경우 기초보강을 하여야 한다
- (6) 기타 심형기초 굴착 시 안전작업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가공송전선로 철탑 심형기초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(KOSHA GUIDE C-54-2012)에 따른다.

7. 철탑 조립 공사 작업안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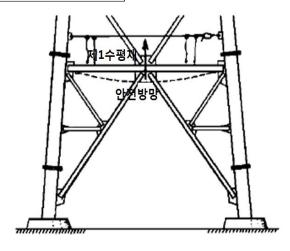
- (1) 철탑을 조립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는 철탑 기초의 되메우기 상태 및 작업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. 또한 공사착수에 앞서 작업공정에 대한 설명과 안전확보 및 안전 유의사항을 교육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철탑 조립 시 볼트, 너트 등의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탑 근로자 뿐 아니라 지상 근로자도 반드시 안전모,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장 출입구에는 위험요소에 대한 안내간판, 안전표지판 등을 미리 설치하여 근로자 및 일반인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여야 한다.

- (4) 조립용 장비, 공구 및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(5) 공사 중 강풍, 폭우 등과 같은 악천우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, 특히 강풍 시에는 높은 곳에 있는 부재나 공구류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이때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악천후는 다음 각목의 경우를 말한다.
- (가) 풍 속 : 초당 10미터 이상
- (나) 강우량: 1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
- (다) 강설량: 1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
- (6) 자재·기구나 근로자가 철탑 구조물, 발판 사다리 또는 기중기, 데릭 등의 일부분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때는 이동 가능성 여부 및 그 강도를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.
- (가) 발판은 그 위에 놓일 중량의 4배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.
- (나) 금속성 작업발판·사다리 등 안전지지물은 안전거리 및 활선작업거리를 검토하여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 며 안전지지물의 넘어짐 등으로 전력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.
- (7) 산림지역 및 위험물 취급장소 내에서는 흡연 및 모닥불을 피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8)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알코올 중독증 등 심신이 불안정한 자는 작업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하며, 고혈압, 저혈압, 당뇨병 증세가 있는 자는 증세가 가볍고 고소작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작업에 종사시켜야 한다.
- (9) 철탑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철탑을 조립할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크레인 설치 장소가 충분한 지지력을 갖도록 바닥면을 다짐하고 성토면 은 안전한 경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9> 이동식 크레인 공법에 의한 철탑 조립작업

- (나) 성토 장소나 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침목, 복공판, 철판 등으로 보강하여 지반 무너짐이 없도록 안전하게 조성해야 한다.
- (다) 부재 등을 들어 올리는 장소의 지상 근로자는 직하로부터 대피하여 떨어 짐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라) 공구 등을 철탑 상부로 운반 시에는 공구 운반함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.
- (마) 크레인 운전시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중량물을 운반해서는 안 되며, 정격 경사각 범위 내에서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바) 운전자는 정해진 신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고, 중량물을 매단채로 운전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.
- (사) 상부재의 짐 걸기는 반드시 슬링 등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걸어야 하고, 작업 시작 전에 슬링 등의 이상유무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(아) 철재류 등은 지상으로 끌거나 던지는 경우가 없도록 운반하고, 훅(Hook) 및 운반기구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자) 기상악화 등으로 철탑 조립작업 중지 시에는 지브는 철탑 주주재 등의 사이에 가능한 한 눕혀 놓고, 훅은 최고 위치에 감아놓아야 한다.
- (10) 철탑 조립작업 중 근로자 떨어짐 방지와 공구, 부재 등의 떨어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 1 수평재 완성 후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. 안전방망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추락방망 설치지침(KOSHA GUIDE C-31-2011)에 따른다.





<그림 20> 철탑 하부 안전방망 설치

- (11) 철탑 승탑 시에는 떨어짐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근로자는 승탑 전 작업내용 및 작업위치를 숙지하고 작업장 주변상황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.
- (나) 승탑 근로자는 안전모,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, 안 전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다) 승탑 작업 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라) 승탑하는 철탑에 활선이 있을 때에는 전압이 얼마이며 어느 회선이 활선 인가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승탑하여서는 안 된다.
- (마) 철탑의 부재에 빙설이 쌓여 있으면 이를 제거한 후 승탑하여야 한다.
- (바) 다른 사람이 승탑하고 있는 바로 위나 바로 밑에서는 동시에 승강하지 말아야 한다.
- (사) 철탑 승강 시 안전대 로프는 지지물에 맞는 적당한 길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아) 작업성격상 부득이 승탑작업과 지상 작업을 동시에 시행할 때는 하부에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조치를 하고 긴밀한 연락 하에 실시하되 작업지시는 단계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.
- (자) 철탑을 오르기 전에 안전화에 진흙, 기타 미끄러운 물질이 묻어있지 않은 가를 살펴보아야 한다.
- (12) 철탑 조립 시에는 떨어짐에 주의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장구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가) 키락

C - 98 - 2014

- ① 키락 본체는 안전대에 장착하고, 안전로프의 락 레버(Lock Lever)와 연결하여야 한다.
- ② 키락 방식에서는 이동과 작업에 앞서 이동경로와 작업장소 부근에 각종 로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동과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각종 로프를 용도에 맞게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근로자는 키락이 확실하게 잠겨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
(나) 수직로프

- 수직로프는 주주재의 꼭대기와 지면 간에 미리 설치하여 근로자가 주주재를 승강할 경우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

[수직로프 설치]



[수직로프를 이용한 이동]

<그림 21> 수직로프

(다) 승강안전기

- ① 근로자는 주주재로 승강할 경우 승강안전기를 수직로프에 부착한 후 안 전대의 키락 본체에 연결하고 주주재에 승강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승강안전기는 수직로프에 부착하면 자동으로 잠기므로 승강안전기를 억지로 분리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, 수직로프에서 분리할 경우가 발생하면 승강안전기 열쇠로 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(라) 수평로프

- ① 수평로프는 철탑 부재간 등에 미리 설치하여야 하며, 근로자는 수평재 위를 이동할 경우 수평로프를 이용하여야 한다.
- ② 2줄걸이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고, 죄임줄은 2줄 걸이로 사용해서 동시에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(마) 수평 이동 로프

- ① 수평 이동 로프는 수평로프에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근로자는 수평이동 시 반드시 키락 본체와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C - 98 - 201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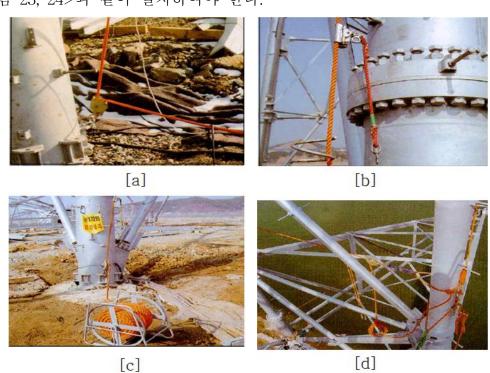


[수평로프, 추락방지용 이동로프] [수평로프 설치 근경]

<그림 22> 수평이동로프 및 수평로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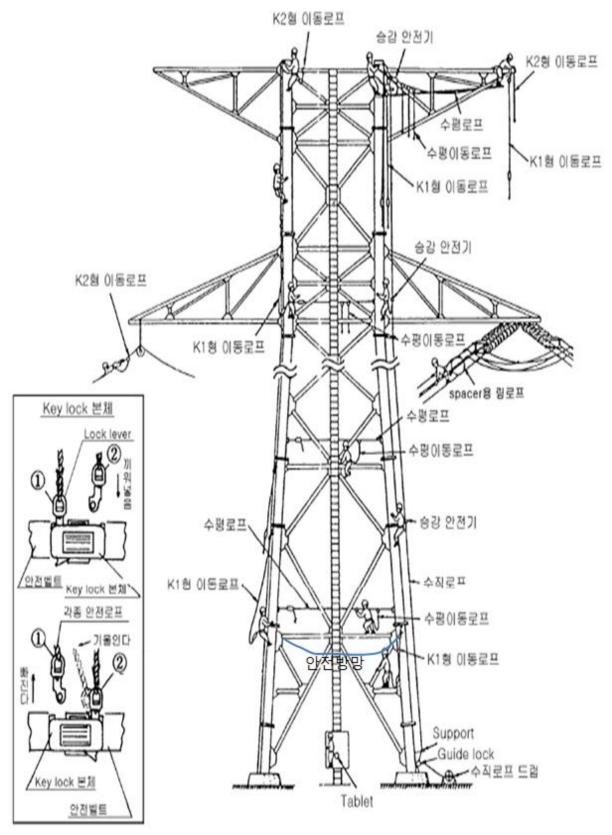
(바) 철탑 승강기

- ① 철탑 승강기는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승강중 동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.
- (사) 철탑 조립 시에는 작업장소에 따른 적절한 떨어짐 방지장치를 아래 <그 림 23, 24>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.



[a:가이드록 설치, b:이동로프 설치] [c: 구명줄용 드럼 설치, d: 충격 감쇄장치 설치] <그림 23> 가이드록 설치 등

KOSHA GUIDE C - 98 - 2014



<그림 24> 철탑의 떨어짐 방지장치 설치 예

- (13) 헬기 운반에 앞서 조사비행을 실시하여 사전에 비행경로 및 타공작물의 횡단개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14) 헬기 운반 및 조립 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다음의 기상조건 시에는 운반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.
 - ①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
 - ② 시계거리 1,000미터 이내인 경우
 - ③ 강우량:1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
 - ④ 강설량:1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
- (나) 비행이 부적합한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르되, 비행여부는 기장이 결정 하여야 한다.
 - ① 강풍이 불거나 풍설인 경우
 - ② 난기류의 발생이 심한 경우
 - ③ 기상의 급변이 예측되는 경우
 - ④ 엔진 등 기체의 상태가 이상이 있는 경우
 - ⑤ 화물의 모양이나 매달기 공구 등이 불량한 경우
 - ⑥ 운반중량을 초과한 경우
 - ⑦ 기타 기장이 비행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(다) 헬기장, 하강장 및 그 주변에 헬기의 풍압으로 날아갈 우려가 있는 물건은 제거하거나 단단히 묶어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라) 헬기장, 하강장 및 그 주변에서는 일절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- (마) 헬기의 진입 및 진출방향 바로 아래서 작업을 하거나 기자재를 쌓아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바) 지상 근로자는 경사지에서 헬기의 주회전 날개, 뒷부분 회전날개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(사) 화물의 운반을 위한 연락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① 헬기장과 헬기간 : 항공무전기 또는 휴대용 무전기
 - ② 헬기장과 하강장간 : 휴대용 무전기 또는 유선전화기
 - ③ 하강장과 헬기간 : 수신호 또는 흑판, 휴대용 무전기
- (아) 하강장과 헬기간의 수신호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.
 - ① 신호자는 하강장에 진입하는 헬기의 기장 또는 헬기상 유도자가 확실하 게 보이는 장소에서 신호를 하여야 한다.

- ② 수신호는 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실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.
- ③ 신호자는 보안경(방진용)을 착용하여야 한다.
- (자) 헬기로 부재를 운반하는 작업 시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① 상부재를 헬기로 운반 시 장척물은 반드시 2점지지로, 기타 부재는 버켓이나 포대 등에 넣어 운반하도록 하여 탈선이나 떨어짐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.
 - ② 헬기는 기종에 맞는 중량을 운반해야 하며, 장척물의 중심점이 헬기의 인하 직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헬기장 주변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, 이·착륙 시 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살수 또는 방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④ 근로자는 헬기의 바람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복장을 단정히 하고 안전모 와 방진안경을 착용하여 비산된 먼지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.
 - ⑤ 작업책임자는 헬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기 전에 비행경로, 작업방법, 안전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.





<그림 25> 헬기 이용 자재운반

- (차) 헬기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배치하고 안전대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. 헬기장에 필요한 설비는 아래와 같다.
 - ① 헬기 계류장, 이 · 착륙대
 - ② 자재하치장 및 화물달기장
 - ③ 연료저장소, 사무실, 통신설비, 화장실, 창고, 주차장
 - ④ 풍향·풍속계, 살수설비
- (카) 하강장의 구비조건은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① 하강장은 헬기장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설치하며, 선로 밑을 피한 장소로

C - 98 - 2014

하여야 한다.

- ② 반입하는 기자재에 적합한 넓이의 평탄한 장소로 주위가 열려 있는 장소로 하여야 한다.
- ③ 운항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벌채를 하여야 한다.
- ④ 거푸집, 시트, 도포용 비닐 등의 풍압으로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정리 및 결속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.
- ⑤ 하강장은 철탑 부근 또는 철탑 부지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⑥ 하강장에 필요한 설비로서는 하장장이 경사지인 경우에는 가설작업대와 통신설비, 풍향·풍속계를 구비하여야 한다.
- (15) 철탑 조립시 낙하물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접근금지표지 및 구획을 하여 야 하고,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작업장 부지 내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8. 전선 설치공사 작업안전

- (1) 전선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.
- (가) 아래와 같은 중요작업은 숙련공을 배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① 드럼장 전선설치 차의 조작
 - ② 연선작업(전선 펴기 작업)
 - ③ 긴선작업(전선 당기기 작업)
 - ④ 전선설치 엔진의 운전
 - ⑤ 활선접근작업 및 기타 필요개소 등
- (나) 윈치 등 동력기계를 사용할 경우 설치장소, 조립도, 용량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(다) 엔진장, 드럼장에는 주위의 낙뢰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38㎡이상 동연선을 사용하여 접지를 하도록 한다.
- (라) 엔진장 설치 시에는 충분한 깊이에 근가 목을 매설 후 충분한 힘을 견딜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주변지반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.
- (마) 발받침, 활차개소, 수목접촉 우려개소, 인상·인하 수평각이 큰 개소 등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
- (바) 횡단공작물이 전력선인 경우 활선작업, 정전작업을 구분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연락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.
- (사) 지장철탑 이설, 철탑의 지지물인 애자교체, 송전선의 거리조정, 송전선의 파손교체 등과 같은 휴전작업장소 발생 시에는 휴전관계자 회의를 작업 전에 실시하며 안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.





<그림 26> 드럼장 용지조성 및 연선차 앵커, 고정와이어 설치

- (2) 전선설치 작업 시에는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공통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근로자는 장력이 걸린 전선이나 와이어가 만든 각도 밖에서 작업하여야 한다.
- (나) 전선설치작업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질 때는 관리감독자를 임명하여 감시 토록 하여야 한다.
- (다) 메신저 와이어를 사용하여 가선할 때는 충분한 강도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고 전선이 늘어져 지면에 닿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라) 지지물 위에서 작업원이 애자련 끝으로 나갈 경우나 이동할 때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마) 전선을 설치하거나 철거시에는 한쪽 암의 전선만 설치 또는 철거하여 불 평형 장력으로 인하여 철탑이 회전·굴절,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바) 전선을 설치하거나 철거시 다른 모든 설비는 접지하여야 하고 접지가 되지 않았으면 충전된 도체로 취급하여야 한다.
- (사) 설치되거나 철거되는 전선은 항상 감시 하에 두어 전선설치장력의 급격 한 변화를 방지하여야 하며, 장력변화로 인하여 인접설비나 근로자가 손 상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
- (3) 전선 펴기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전선드럼 또는 엔진을 설치한 장소에서는 연선구간 배치도를 비치하고 전선펴기구간의 전선 1조당 길이 및 전선접속위치, 엔진장소 구간내의 철탑 각도 및 고저차, 작업원의 배치상황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.





<그림 27> 인양 윈치 설치 및 예인 로프 이동





<그림 28> 드럼장의 설치전경 및 전선 드럼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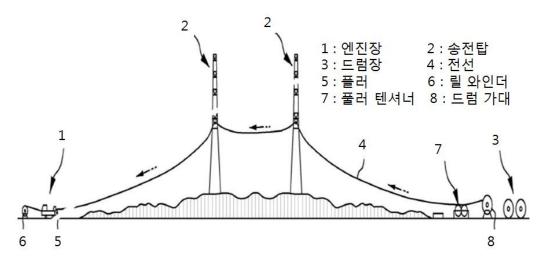
- (나) 통신설비를 드럼, 엔진, 철탑, 기타 중요장소에 배치하고 아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 - ① 전선 와이어의 상태와 활차의 회전에 유의하여 상호연락하면서 연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연선 구간 내에서는 항상 연락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되도록 유선 또는 무선전화 설비를 전선설치장비, 철탑, 기타 중요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③ 관리감독자는 유, 무선 전화기를 병용하여 드럼장, 엔진장 장소와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야 한다.
 - ④ 전기적인 유도가 예상되는 장소의 유선전화설비는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



<그림 29> 연선차 설치전경 및 고정프레임 실제부착모습

- (다) 철탑에 설치하는 가지선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① 가지선의 굵기 및 조수는 철연선 38m² 2조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강연 선으로 하고 각 암 마다 개별로 매설된 근가에 고정하여야 한다.
 - ② 가지선의 회전방지를 위하여 턴버클에는 통나무나 각재를 끼워야 하며 외부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획로프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③ 철탑 암에 부착하는 가지선은 수평각도 30°이하로 하여 암이 수직하중 증가로 인한 굴절을 방지하여야 한다.
 - ④ 전선퍼기 경계철탑은 원칙적으로 가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⑤ 가지선은 주주재와 암주재의 교점 또는 암의 끝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.
 - ⑥ 연선경계철탑을 보강하는 가지선의 부착방향은 원칙적으로 선로중심 방향과 평행으로 하고 부착각도는 수평지면과 가지선이 이루는 각이 45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라) 활차 사용시 활차걸이에 걸리는 힘은 연선와이어가 형성하는 각도 및 와이어 장력에 의하여 크게 변하므로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하다.
- (마) 기설 송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 전선 등에 고전압이 유기될 수 있으므로 유도방지장치(접지로라 등)를 설치하 여야 한다.
- (바) 전선설치용 블록은 홈이 마모, 손상되었거나 회전이 불량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사용 전에 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.



<그림 30> 가선공사 개념도

- (4) 전선설치 장비사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전선펴기 차는 드럼대와의 거리를 10미터 이상으로 하고 충격에 의하여 위치변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.
- (나) 전선펴기 차의 제동장치는 특히 방습에 유의, 정상상태에서만 사용토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.









<그림 31> 풀러텐셔너(Puller Tensioners) 연선작업 및 전력선 요크 부착

- (다) 운반 시는 그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하며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점검 및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(라) 장시간 연선을 중지할 경우는 참아롱 등으로 연선차 앞에 전선을 붙들어 매어 전선이 미끄러져 풀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(마) 전선설치장비의 시동, 정지, 속도조정은 각 작업개소와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바) 전선펴기 작업을 원활하게 행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장소에 는 반드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 - ① 발받침 설치개소
 - ② 인하 블록 및 연선롤러(Roller) 설치개소
 - ③ 인 · 출입 각도가 큰 철탑(수평각도, 인상 및 인하각)
 - ④ 연선 중 메신저와이어나 전선이 수목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
 - ⑤ 공공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곳
- (5) 전선 당기기 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애자 금구류를 인상작업 시 심부름 바를 직하에서 당기는 것은 피해야 하다.
- (나) 볼트, 너트 및 공구류는 전용가방이나 견고한 주머니 등을 사용하여 떨어 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다) 권상용 윈치가 작업 중 주재, 부재, 발판볼트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확인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라) 와이어, 접속공구 등은 사전에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마) 전선당기기 작업을 할 때에는 철탑 암의 가지선, 활차걸이 부착점을 점검 하고 활차의 회전, 전선의 이탈, 전선당기기의 원활상태 등에 대하여 긴 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32> 풀러텐셔너(Puller Tensioners)

- (바) 충전된 선로가 근접하여 있고 유도전압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전선을 설치하거나 철거 시는 휴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사) 철탑 암의 애자 끝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.
- (6) 발받침 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발받침을 나무로 시공할 때는 연결하는 부분을 1미터 이상 겹쳐 2개소 이상에서 묶어야 한다.
- (나)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.8미터 이하, 장선 방향에서는 1.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.
- (다) 발받침 고정용 지선은 강연철선 혹은 와이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받침 형태에 따라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라) 보호받을 공작물이 15미터 이상의 높이일 경우 또는 폭이 8미터이상인 도로·궤도상에 설치할 경우는 발받침용 철주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마) 배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발받침은 설치 전에 관계자와 협의, 전선에 절연 방호관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.
- (바) 발받침이 도로상 또는 도로에 걸쳐 설치될 때는 적색기, 위험표지, 다용도 안전경보기, 조명등 등을 발받침으로부터 최소한 100미터 전·후방에 설치하여 위험을 경고하여야 한다.
- (사) 철제 발받침을 전기설비 보호용으로 설치할 때는 임시 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(아) 강풍 등의 일기예보가 있을 때는 발받침틀의 강도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부족시는 지선 등으로 보강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

<그림 33> 발받침 설치



<그림 34> 보선원 배치

- (7) 헬기를 이용한 전선펴기·전선당기기 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와이어로프 전선 펴기에 앞서 전선펴기 구간의 조사비행을 실시하여 풍향, 풍속, 횡단물, 가이드봉의 부착상황, 와이어로프의 고정개소, 작업원의 배치상황, 긴급시 착륙장소, 철탑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나) 전선 펴기 중 특고압선로, 철도, 도로 등 중요 횡단개소에는 보선원을 배 치하여야 한다.
- (다) 탑상 유도원, 관리감독자는 안전대 등의 개인보호구를 완벽하게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.
- (라) 와이어로프를 철탑에 결박 시에는 헬기에 의한 풍압이 강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.
- (마) 와이어로프가 헝클어져 로프가 풀리지 않는 등 긴급사항이 발생시 지상 에서 와이어로프를 자르든가 전선 펴기용 기기를 분리하여야 한다.
- (바) 헬기가 철탑부근을 통과할 때는 탑상작업원은 철탑부재 내측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절대로 낙뢰 차폐선 암 위로 머리를 내밀어서는 안 된다.
- (8) 철탑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개폐기를 투입하기 전에 모든 작업원이 충전부에 접근치 못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뒷정리 확인 후 송전하여야 한다.